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원 8명(5급 7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일까지에서 2028년 8월 3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구 1팀(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5명(5급 5명, 7급 6명, 8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방호서기보 정원 1명을 방호서기로 직급 상향 조정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결원이 발생한 소수직렬(운전서기보)을 복수 직렬(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00. ~ 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중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9”를 “40”으로, 운전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11 중 방호서기 “1”을 “2”로, 농업서기 “187”을 “186”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9”를 “40”으로, 농업서기보 “31”을 “32”로, 운전서기보 “5”를 “4”로, 방호서기보 “3”을 “2”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6년 5월31일”을 “2028년 5월31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2026년 8월 3일”을 “2028년 8월 3일”로, “2026년 8월 4일”을 “2028년 8월 4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6항 중 “2026년 5월 31일”을 “2028년 5월 31일”로, “2026년 6월 1일”을 “2028년 6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2026년 8월 3일”을 “2028년 8월 3일”로, “2026년 8월 4일”을 “2028년 8월 4일”로 한

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 15명(농업사무관 5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6명, 농업서기 4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15명(농업주사 5명, 행정서기·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6명, 농업서기보 4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1명(방호서기 1명)은 202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1명(방호서기보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 경기지원의 수도권농식품 조사팀은 <u>2026년 5월31일까지</u>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2028년 5월31일</u> ----- -----.
② · 제4조 (생 략)	② · 제4조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5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5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

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은 <u>2026년 8월 3일까지</u> 존속하며, <u>2026년 8월 4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 ----- ----- ----- ----- ----- <u>2028년 8월 3일</u>----- <u>2028년 8월 4일</u> ----- ----- -----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⑤ (생 략) ⑥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3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명)으로 본다.

⑦ 삭 제

⑧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60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5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6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명)은 2026년 8월 3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7명(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

2028년 8월 3일

2028년 8월 4일

사 또는 농촌지도사 6명, 행정
서기 또는 농업서기 1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②
(생략)

③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2조제7항에 따른 정
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4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16명(농업사무관 5명, 행
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
계주사보 6명, 농업서기 5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
원 16명(농업주사 5명, 행정서
기·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6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명, 농업서기보 5명)으로 본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 · <u>39</u>	· · <u>40</u>	+1
· 운전서기보	· <u>7</u>	· <u>6</u>	-1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방호서기			<u>1</u>		<u>2</u>	+1	
	.		.		.		
농업서기			<u>187</u>		<u>186</u>	-1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39</u>		<u>40</u>	+1	
농업서기보			<u>31</u>		<u>32</u>	+1	
운전서기보			<u>5</u>		<u>4</u>	-1	
방호서기보			<u>3</u>		<u>2</u>	-1	
	.		.		.		
	.		.		.		